

서울특별시성동구통계사무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안

서울특별시성동구통계사무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계사무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부서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각종 통계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계담당부서"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통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각 과 및 담당관"을 말한다.
3.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통계책임관 등의 지정) ① 통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계책임관과 그 임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통계담당관을 둔다.

- ②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통계책임관은 통계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통계담당관은 통계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통계책임관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통계책임관 등의 임무)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작성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구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② 통계담당관은 구 소속부서의 통계의 작성·집계·보관·관리 등 제1항에 규정된 통계책임관의 사무를 보조한다.

제5조(통계작성의 승인 및 협의)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시행령」 제25조의 통계작성의 승인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승인신청이나 협의요청을 할 경우에는 통계책임관의 결재 또는 검토과정(통보) 등을 거쳐야 한다.

제6조(통계의 공표)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통계자료와 설명 자료를 같이 제공하고 자료가 변경된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조사표 및 전산자료 등 수집된 통계자료를 안전한 장소 또는 전산 데이터베이스 등의 매체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유·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자료의 이용) ①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목적, 내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통계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내용 등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해당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 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취급 및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자료는 통계의 작성, 작성된 통계의 검증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승인된 장소에서 승인된 이용자에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통계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하며, 그 제공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